



- 「KRIMFI 배관 및 장비 단열기준」을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함
- 기존 표준시방서 기준이 단열재 종류와 관내온도 등으로 단순하게 분류되던 방식을 개선하여 배관재질, 표면방사율, 열전도도, 관내온도 등으로 상세하게 정리하여 기준을 제시함
- 「KRIMFI 배관 및 장비 단열기준」은 표준시방서 기준보다 에너지 성능이 평균 24% 개선되는 효과를 얻음

###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KRIMFI 배관 및 장비 단열기준」은 앞으로 실증 및 관련업체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거듭 보완해 나갈 예정임
- 「KRIMFI 배관 및 장비 단열기준」은 향후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단열기준 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제로에너지 빌딩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

# 건설공사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개선방안

오치돈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 1. 과제구분 : 기본과제

(연구기간 : 2016.1.1. ~ 2016.12.31.)

### 2. 연구의 필요성

-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건설업체의 근로자 보험 가입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음
- 본 제도는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의 개정을 통해 2007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의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게 됨

- 사후정산제도가 도입 및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최근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률이 과거 5년 전 보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향후 건설근로자의 보험가입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4. 연구의 내용

### ① 사후정산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 건설근로자 보험가입 및 보험료 정산 실태
  -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최근 5년간 4대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
  - 반면, 조달청의 건설공사 경비 정산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실제 정산 비율이 3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후정산제도 도입 이후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현저에서는 사회보험료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고 있는 다소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직접공사비 감액의 원인으로 작용
  - 원도급 업체의 입찰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는 타 업체와의 가격 경쟁, 원도급 업체의 감액 요구 등의 이유로 전체 입찰금액을 낮춰야 할 경우, 법적 요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인위적으로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연동된 직접노무비를 감액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보험료 정산 방식의 경직성
  - 하도급 업체의 보험료 정산은 최초 원도급 업체와 체결한 계약금액 내에서의 보험료만을 정산하고 있음. 즉, 동일한 사업 내에서 전체 보험료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초과 집행한 하도급 업체는 초과금액을 정산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
  - 특히, 공사규모가 커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의 경우 건설근로자 수급부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최초 계상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 근로자의 의도적 가입 기피
  -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건설근로자는 보험징수 요

- 율에 따라 사업주와 각각 50%씩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함
- 그러나,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보험가입을 기피함으로써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보험가입 대상자를 미신고한 업체가 적발된 경우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부담분 보험료 모두 사업주에게 징수되며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어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보험요율의 비현실성 및 일률적 적용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징수 요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반면,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보험요율은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
  - 특히, 총 공사금액이 증가할수록 20일 미만 근로자의 비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일 이상 근로자의 비율을 약 55%(2016년 기준)로 추정하여 모든 건설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이에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보험요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민간부문 보험료 확보 효과 미흡
  -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보험료 계상 수준을 조사한 결과, '실제 지급비율 보다 적음(업체가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공공은 28.6%, 민간은 45.7%인 것으로 나타났음
  - 사후정산제도는 도입 이전에 비하여 보험료 확보가 용이하고 공사원가에 계상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민간부문에서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입 예외 규정에 의한 가입 누락
  - 현재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 건설근로자의 보험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근로자의 잦은 이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동일한 현장에서 20일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업체와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② 사후정산제도 개선방안

- 공사에정가격에서 보험료 제외(보험료 정산주체 변경)
  - 공사에정가격에서 계상된 보험료를 제외하고 제3기관에 정산업무를 위탁하는 건설공사 사회보험 에스크로(escrow) 정산방식을 제안하였음. 본 방식은 발주자가 공사에정가격에서 계상된 보험료를 제외하여 제3기관에 별도로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하도급 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위탁받은 기관과 실비 정산하는 방식임
  - 본 방식은 원도급 업체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사업의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과 하도급 업체가 보험료와 연계된 직접공사비를 인위적으로 감액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보험료 정산방식의 유연성 확보
  -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 선정 시 공사에정가격에서 사회보험료 금액을 모두 제외하고, 하도급 업체의 보험료 초과와 잔액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보험료를 지급 및 정산하는 등 보험료 정산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발주자가 공사에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보험료가 개별적인 하도급 업체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집행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후정산제도의 도입취지와 부합됨
- 공사규모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 적용

- 공무원가에 반영되는 보험요율을 공사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실제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장기간 근로하는 근로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보험적용 대상범위 확대를 통한 보험료 확보
  - 전문건설업체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납부한 모든 보험료를 실비로 정산하는 등 본 연구에서 제기한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는데 전제 하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현재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 비율을 약 55%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만,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에 포함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결론 및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개선방안은 실제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충분한 보험료 확보를 가능케 하여 이들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국내 건설시장의 규모가 공공이 약 30~40%, 민간이 약 60~7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개선된 사후정산제도 제도를 공공부문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보다 건설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과 같이 사후정산을 통해 반납하는 항목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